

서울고등법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13나16239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83095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변론종결	2013. 3. 20.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환송전 당심 공동피고 법무법인 C(이하 '법무법인 C'이라고만 한다)과 각자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법무법인 C 부분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법무법인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 2,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부분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상고기각 됨으로써 이미 분리·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E은 2004. 9. 23. D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안산시 단원구 F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매매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9. 24.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은 2006. 1. 23. G으로부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06. 1. 26. 위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다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위 본등기청구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위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쳐주었다. I은 2006. 1. 26.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주식회사 J은행(이하 'J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I은 2006. 1. 18.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31,923,702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라. D의 채권자들인 K, L, M, N가 2006. 5. 25. I, H, G, J은행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합3056호(이하 '제1심'이라 한다)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I, H, G, J은행은 2006. 8. 22. 피고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C과 제1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법무법인 C이 I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결과 "① D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206,871,575원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② G, I은 각자 M에게 206,871,5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2007. 12. 27. 선고되었다.

마. 이에 제1심의 원고들 및 I, G은 서울고등법원 2008나18057호(이하 '항소심'이라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I과 G은 법무법인 C과 항소심 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바.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2009. 6. 25.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① D와 G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12억 4,6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② D와 I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929,145,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③ I은 K에게 10억 4,000만 원, L에게 8억 5,000만 원, M에게 2억 4,750만 원, N에게 37,6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 그 후 법무법인 C은 2009. 7. 22. 항소심 법원에 I 및 G의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데, 법무법인 C 명의로 작성된 I의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인 2009. 9. 17.을 도과하여 2009. 9. 22.에야 비로소 제출되는 바람에 I의 상고가 2009. 10. 29. 그 이유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659773, 이하 '상고심'이라 한다).

아. I은 2010. 7. 6.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O)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

I이 법무법인 C과 사이에 상고심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법무법인 C은 상고이유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법무법인의 C의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인 피고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기하여 법무법인 C과 각자 원고에게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 929,145,000원 중 일부인 1억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등 합계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판단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회

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법무법인 C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아니라 소송위임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그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인 피고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0조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는 법무법인 C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C의 재산으로 위 손해배상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이수영 유지원